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92
----------	------

2025년 12월 23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장태용 의원 (찬성자 31명)
- 나. 제 안 일 : 2025년 10월 20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10월 23일
- 라. 상 정 일 :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태용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층 및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다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종합적인 인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재단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장학 지원 외에도 진로 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단의 목적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성장 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함(안 제명, 안 제1조).
- 지원대상을 학생·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미래인재를 새롭게 정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함(안 제2조, 안 제6조).
- 사업의 주된 범위를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청년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5조).
- 재단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자구 일부 정비함(안 제6조).
- 재단 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2025.10.28 ~ 11.1.)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종합적인 인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원 외 진로 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서울장학재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은 조례개정의 목적, 정의, 사업, 지원대상, 임원 자격 요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조 문 체 계	주 요 내 용
조례명	- 제명 변경 : 서울장학재단 → 서울미래인재재단
제1조(목적)	-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에 대한 종합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
제2조(정의)	- ‘학생’, ‘청소년’, ‘청년’, ‘미래인재’를 정의
제5조(재단의 사업)	- 미래인재의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학생, 청소년과 청년 등
제7조(재산의 조성)	- 재단의 운영재원 중 기금 삭제
제8조(정관)	- 정관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제9조(임원)	- 이사장과 이사 자격 요건 규정
부 칙	- 경과조치

- 장학 환경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민간장학재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통적 장학방식(등록금·수업료 지원 중심)의 효과성이 약화되어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의 재구조화·재설계 등이 요구되는 전환기로 보여짐.
- ‘서울장학재단’(이하 ‘본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서울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표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도 AI·이공계, 글로벌인재, 진로개발 등 서울 미래산업과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신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 본 개정안은 단순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학업 중 또는 졸업 후 진로 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 능동적, 체계적 인재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장학 관련 수요의 형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공급방식 변화를 추진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본 재단의 정체성 및 자원 배분 불균형, 재정 효율성 및 기능 중복 문제, 임원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1) 조례의 명칭 및 목적(안 제1조)

- 본 재단의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목적을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 마련’으로 확장한 것은 재단의 역할을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재단은 ‘교육복지 기관(전통적인 장학기관의 기능, 경제적 지원)’에서 ‘성장지원 플랫폼(청소년·청년의 성장경로 설계 및 미래 역량 지원 등)’으로의 정체성을 전환하려는 것이나, 무상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교육 격차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 본 재단의 기존 역할(학비 지원)은 축소하고, 생활·경험·역량·경로 지원은 확대하며, 명칭을 변경하는 것 등이 ‘교육 접근권 보장’ 또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여지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안 제2조) 및 지원대상(안 제6조)

- 안 제2조는 ‘청년’과 ‘미래인재’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으로, ‘청년’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미래인재’는 학생, 청소년, 청년으로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진로 탐색 및 경력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미래인재’의 정의는 범위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 ‘능동적 참여’ 등은 객관적 계량이 어려워, 심사 과정에서 특정 분야(예: IT, 창업)에 편중되거나,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보임.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가.~라. (생략)	1.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가.~라. (현행과 동일)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3.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4. "미래인재"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그와 관련한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기존 학생과 청소년에서 청년과 미래인재까지 포괄·확대하여 고등 교육 이후 취업 준비 및 경력 전환 시기에 있는 청년층에게 진로 탐색 및 역량 개발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미래인재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 교육 체계가 포괄하지 못했던 혁신적이거나, 각광받지 못했던 활동(연구·사회공헌·산업연계, 역량 등) 등에 참여하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방대한 인구 집단으로, 이들이 재단의 지원 대상에 편입됨으로써, 재단이 지원해야 할 잠재적 수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인바,
- 한정된 재원으로 기존 학생 중심의 장학사업과 수많은 청년층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단위당 장학금 지원 금액을 낮추거나 사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 효율성 및 시민 만족도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 명확한 재원 기준과 원칙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제6조(지원대상) ① 재단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	개정안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학생 3.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하거나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시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학교의 학생 5.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및 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년 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특정 분야나 계

현행	개정안
	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조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또한, 본 재단이 주력하려는 진로 개발 및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은 이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1조, 제12조)에 따라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청년의 고용확대 등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정체성의 희석(Dilution of Identity), 정책 효과 분산, 책임소재 모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 수요자의 혼란(장학금인지, 청년지원금인지) 방지 및 정책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분장·지원대상 조정·정책 통합 또는 단일 창구 운영 등의 사전 절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장학금 지급은 주로 서류 심사와 자금 집행 등 행정적 성격이 강한 업무지만, 진로 개발, 취업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영역인바, 현재 재단의 인력 구조와 조직 역량이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변경을 원활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문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효과성 측정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행력 담보가 서울시 장학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5.1.3.>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⑥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임원 자격요건 개정(안 제9조)

- 안 제9조는 재단의 사업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임원 자격에 ‘교육·산업·과학기술’ 등 미래인재 양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명시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 및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 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원 구성 시 특정 분야 전문가(예: 산업계나 기술 전문가) 중심으로 편중하여 이사회가 구성될 경우, 재단의 또 다른 축인 ‘사회적 약자 지원’과 ‘복지’ 관점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질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 ② 이사장과 이사는 시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 과 시 교육청 관련 실·국장 및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2. 5. 22.>	제9조(임원) ② 이사장과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인사로 한다. 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인재 양성 또는 청년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산업·과학기술·문화·복지 등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부칙(제3조)

- 안 부칙 제3조는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타목 중 “서울 장학재단”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본 개정안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체성 혼란, 전문성 부족, 기능 중복 등의 위험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어, 성공적인 본 재단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면적인 사업 전환과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며 단계적 사업 확대 및 전환 방안
- 기존 서울시 행정기관과 역할 분담 및 재단 고유의 기능 설정 여부
- 현실적 자원 규모 추계 및 기부금 유치 전략 등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 등.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태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9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장태용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신복자,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최윤희,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층 및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다만,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 중심의 종합적인 인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재단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장학 지원 외에도 진로 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목적을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성장 시스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칭을 '서울장학재단'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

- 나. 지원대상을 학생·청소년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미래인재를 새롭게 정의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함(안 제2조, 안 제6조).
- 다. 사업의 주된 범위를 진로개발취업역량 강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학생과 청년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5조).
- 라. 재단 기능 강화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자구 일부 정비함(안 제6조).
- 마. 재단 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미래인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와 미래인재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종합적인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미래인재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와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 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미래인재”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그와 관련한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미래인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인재의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
3.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① 재단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학생
2. 진로탐색과 경력개발, 사회공헌, 창의적 활동 등에 참여하는 청소년

과 청년

3.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특정 분야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인사로 한다.

1. 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인재 양성 또는 청년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산업·과학기술·문화·복지 등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시장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통할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 수입 및 시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타목 중 “서울장학재단”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 명칭변경과 지원대상(청년) 추가 명시를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의한 **비용발생 여지**¹⁾가 있어 서울장학재단에 유선문의하였으나, 확인결과 재단 명칭변경과 관련된 **실질적인 비용소요**²⁾는 없고, 청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또한 **기추진**³⁾하고 있어 향후 해당 사업을 추가로 확대추진⁴⁾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본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 1)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재정소요 영향 검토 필요성] 서울장학재단은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출연기관(2026년도 12,813,397천원 출연예정)으로 본 규정에 의한 ① **소요비용 발생여부**와 함께 해당비용 ② **부담주체**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통상 기관 명칭변경 규정은 BI개발, 명패 및 간판(현판), 홍보비 등의 교체비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집행기관의 추진계획, 과거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해당비용의 소요규모와 부담주체를 확인하여야 함
- 2) [소요비용 소액 및 서울시 미부담] 서울장학재단은 BI개발, 명패 및 간판(현판), 홍보비 등의 교체비용이 소요되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또한 서울시에서 추가로 부담(가령 출연금 증액)하는 것이 아닌 **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한 사안**(예산 집행 효율화)이라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서울시 재정지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3) [기추진사업] 서울장학재단 2025 <AI서울테크 대학원 장학금>
 - 사업규모: 예산 2,227백만원, 선발인원 275명
 - 지원내용: 석사과정 연간 1인 1,000만원, 박사과정 연간 1인 2,000만원
- 4) [사업확대 미반영] 통상 기추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근거규정 신설은 ① 확대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 여부가 달라지고, 나아가 ② 다양한 지출요인에 따라 적정 확대규모가 정해지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출계획, 예산 한정성, 재정투입 우선순위 등과 같은 **재정지출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며,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서울장학재단에**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현재로서 **별다른 확대계획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계 고려사항(통상 불확실성 정보 제외)에서 제외함